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선거비용 미반환 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징수 위탁 등〉

■ 한병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337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황 승 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병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2. 17.
3. 회 부 일 : 2025. 12.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선거에서 정당·후보자가 선거비용 및 기탁금을 보전·반환받은 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보전·반환받은 금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납부기한 내 반환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1월 기준으로 제8회 지방선거의 반환대상액 약 81억원 중 반환액은 약 27억원에 불과하여 반환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이에 대하여 지방선거의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 귀속임에도 징수권한이 선거관리위원회와 관할세무서장에게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재산으로 관리할 근거가 없으며,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미반환액에 대한 징수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이 반환하여야 할 선거비용을 미반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여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를 방지하고, 선거비용 반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5조의2제3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이 반환하여야 할 선거비용을 미반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 반환) ① (생략)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고지하여야 하고, 당해 정당·후보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 ----- -----해당----- ----- -----해당----- ----- -----.
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당해 정당·후보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후보자의 주소지(정당에 있어서는 중앙당의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 ----- -----납부기한까지 해당----- -----대 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해당 후보자의 주소지(정당에 있어서는 중앙당의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

④ · ⑤ (생략)	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경우 정당 및 후보자가 보전·반환받은 선거비용¹⁾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하고, 이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후보자의 주소지(정당의 경우 중앙당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여, 세무서장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제265조의2제1항~제3항).²⁾

그런데,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함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국고 손실과 도덕적 해이라는 측면에서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1) 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에 따라 10%이상 15%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의 경우 선거비용의 50%를,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의 경우 선거비용의 100%를 보전함.

2) 법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①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자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57조와 제122조의2에 따라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모두 무효로 된 때에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한다.

②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고지하여야 하고, 당해 정당·후보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당해 정당·후보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후보자의 주소지(정당에 있어서는 중앙당의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실제로 2025년 7월 기준 선거비용 반환대상 금액 496억 8,900만원 중 274억 3,800만원만 반환되고 나머지 222억 5,100만원은 반환되지 않고 있으며, 이중 지방선거 미반환금액은 209억 8,200만원으로 전체 미반환금액의 94.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임.

《 선거 보전비용 미반환내역 》

(2025.7.31.기준, 단위: 건/백만원)

구 분	반환대상		반 환		미반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국가선거	69	8,248	57	6,979	12	1,269
지방선거	369	41,441	296	20,459	73	20,982
합 계	438	49,689	353	27,438	85	22,251

※ 2025.1.31. 대비 총 미반환금 3억 1,900만원 증가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재 기한 내 미반환금액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세청과 세무서의 주 업무는 조세 징수이며, 선거비용 반환은 부가적인 업무로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 보전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지급된 것인바,³⁾ 이를 징수하여 세입으로 처리하는 것은 해당 지방자치

3) 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한다]을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후 보전한다.

단체의 재정 건전성 제고와 연계되는 부분이므로, 지방선거 보전비용의 반환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에 대한 동기부여가 세무서보다 더 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함.

이에 개정안은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이 반환하여야 할 선거비용을 미반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반환받은 선거비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선거비용 반환 노력을 기울이게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선거비용 반환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다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고,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행정기관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부과·징수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및 변상금, 그 밖의 조세 외의 금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⁴⁾ 반환 대상 선거비용이 “지방행정제재·

4)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부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개정규정에 “단, 미반환된 선거비용 반환금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과금으로 본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비용 반환금”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임.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취지, 예상되는 법 적용상의 문제점, 대안 및 보완의 가능성,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무효에 따른 반환대상액 징수에 실무상 어려움이 있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보여 수용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국가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위탁받아 부과·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및 변상금

나. 그 밖의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